# 복합기 임대 서비스 계약서

2016. 08. 16.

㈜ 원익 IPS

㈜ 루맨

#### RENTAL 서비스 계약서

(주) 원익IPS (이하"갑"이라 한다)와 ㈜ 루맨 (이하 "을"이라 한다)간에 Rental서비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.

#### 제1조 Rental의 정의

Rental 서비스란 "을"의 소유기계를 "갑"에게 임대하여 "을"이 항상 기계의 성능을 정상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, "갑"은 "을"에게 그 대가로 임대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제2조(서비스 제공범위 및 내용)

- 1. "을"은 계약기간 중 기계사용에 필요한 토너, 드럼, 부품 및 기술료는 서비스계약 종류에 따라 제4 조에 의거 유상 또는 무상 제공한다.
- 2."을"의 서비스 실시는 "을"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.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을"의 서비스 무상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.
  - (1) "을"이 공급하는 제품의 소모품, 토너, 드럼, 부품 및 지정된 복사용지 이외의 것을 임의로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
  - (2) "을" 또는 "을"이 지정한자 어회의 제3자에게 기계를 분해, 수리, 개조, 가공시킨 결과로 인한 고장의 경우
  - (3) "을"이 지도한 조작방법을 위배하거나, "갑"의 고의로 인해 고장이 발생된 경우
  - (4) 천재지변, 화재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
  - (5) "갑" 또는 제품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수리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"을"은 "갑"에게 실비로 요금을 청구한다.

#### 제3조 (Rental서비스계약기계)

Rental서비스계약 대상기계는 다음과 같다.

| 모 델 명    | 옵 션 | · 량  | 기계 설치일     | 설치장소        | 담당자 | TEL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SL-K4350 | FAX | 12 대 | 2016-08-22 | ᆸᆈᄵᅼᆉᅜᅜᅜ    | 구경모 | 010-8201-8122 |
| SL-X4220 | FAX | 1 대  | 2016-08-22 | 본사/이천/탕정/동탄 |     |               |

주 소 : 경기도 화성시 진위면 청호리 332-1번지

## 제4조 (서비스계약 종류 및 유/무상서비스제공사항) 서비스 계약 및 유/무상서비스 제공사항은 다음과 같다

| 서비스  | 유 / 무 상 서 비 스 제 공 사 항 |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|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--|
| 계약종류 | 토 너                   | 드 럼 부 | 품 및 기술료 | 보 증 금 | 기 타 |  |
| 임대   | 무 상                   | 무 상   | 무 상     | 없음    | 팩스  |  |

#### 제5조(Rental요금)

1. Rental요금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다음과 같다.(A4기준)

| 구 분      | 기본 매수                   | 수량  | 월 기본 렌탈료<br>(VAT <sup>별도)</sup> | 부가세    | 요금 합계<br>(VAT포함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SL-K4350 | 6,000매                  | 12대 | 756,000                         | 75,600 | 831,600          |
| SL-X4220 | M : 6,000매/ CL : 3,000매 | 1대  | 18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| 18,000 | 198,000          |

- 2. "갑"의 월간 사용매수가 기본계약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"갑"은 기본요금을 "을"에게 지급한다.
- 3. "갑"의 월간 사용매수가 기본계약매수에 초과할 경우에는 "갑"은 초과금액을 "을"에게 지급한다.
- 4. 계약해지의 월 사용기간이 1개월이 달되는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"을"에게 지급한다.

#### 제6조 Rental요금 정산 및 지불

1. "갑"과 "을"은 매월 (20)일에 해당기계의 Counter수치(복사매수)를 공동 확인하여 Rental요금을 정산하여 (25일)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, "갑"은"을"에게 Rental요금을 익월 (10)일 까지 현금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 지불한다.

| 지정계좌번호 | 422-039045-04-011 | 은 행 명 | 기업은행 | 예 금 주 | ㈜ 루맨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
2. 년간 기본요금을 일시불 납입하고 월 기준 매수를 초과 사용할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정산한다.

#### 제7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설치일로부터 2019년 08월 15일 까지 하되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쌍방의 서면으로 해약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 등 '갑'이 변경을 희망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#### 제8조 (소유권 및 권리의무)

- 1. "갑"은"을"이 규정하는 기계 및 소모품을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, 화재 및 분실 등의 어떠한 재해로 부터도 보호하여야 한다.
- 2. "갑"은 기계 및 소모품을 타에 매각, 양도, 대여, 유용, 질권 설정 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 기타 "을"에게 손해를 야기케 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"갑"은 "을"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(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공조 및 공과의 체납)등에 의한 행위에 대해 "을"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,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"을"에게 통지하고 "을"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- 4. "갑"이1,2,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"갑"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계 및 소모품이 손 상되었을 경우 "을"의 청구에 의하여 "갑"은 즉시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 (설치장소의 변경)

- 1. 기계의 설치 장소는 제3조에 기재된 장소에 한정키로 하고 만약"갑"이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"을"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이동설치는 "을"이 담당한다.
- 2. "을"은 본제품의 이동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를 "갑"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"갑"은 "을"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.

#### 제10조 (계약조항의 변경)

"갑" 또는 "을"이 본 계약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1개월 전에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11조 (철회권)

- 1. "갑"은 계약서 교부일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설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 단,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 할 수 없다.
  - (1) "갑"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기계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
  - (2) "갑"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2. "갑"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"갑"은 이미 설치한 기계를 반환하고 "을"은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며, "을"은 기계반환에 필요한 비용 및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.

#### 제12조(계약의 해지)

- 1. "갑" 또는 "을"이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때는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"을"은 "갑"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는 15일간의 서면 최고 절차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"갑"은 "을"의 기계 철수에 협조하고 계약 해지시의 채무전액을 즉시 지급 해야 한다.
  - (1) "갑"이 본 계약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사유 발생하는 경우
  - (2) "갑"이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Rental서비스요금의 지급을 2개월(60일 초과)이상 지체한 경우.
  - (3)"갑"이 압류, 가압류, 경매, 공과 및 공조의 체납처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어 공신력이 현저히 상실된 때
- 3. "갑"이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, 해산, 파산 등의 신청을 당한 경우, "을"은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4. 계약이 해지될 경우 "갑"은 "을"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을 즉시 "을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 5. "갑"은 "을"의 귀책사유가 없이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 해지 할 경우에는 "을"에게 Rental 유지보수계약에서 규정한 잔여 임대차 기간에 월 기본요금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지급 하여야 하며, "갑"은 잔여 소모품 등을 반환 하여야 한다.
  - 단, 계약의 정상종료가 아닌 "을"와 변경 시는 제 3의 업체가 위약금을 대납 할 수도 있다.

#### 제13조 (소모품 공급)

1. "을"은 "갑"이 기계를 사용함에 필요로 하는 토너, 드럼, 기타 소모성부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14조 (기타)

- 1.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, 민법, 상사 관습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2. 법적 분쟁의 관할법원은 "갑"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신의, 성실로 이행키로 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"갑"과 "을"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### **-2018**년 08월 16일

(갑) 주 소 :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다로 75

사업자 등록 번호 : 695-81-00374

상 호 :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등

대 표 자:변정 우

(을) 주 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4 (세류동)

사업자 등록 번호 : 124-86-55824

상 호 : 주식회사 루맨

대 표 자:최 병 영